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법 (부분발췌)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서면) 1.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 (구가설치 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부분발췌)

제82조의 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② 법제111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서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